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32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김상훈 · 강대식 · 안철수
고동진 · 이현승 · 김재섭
윤한홍 · 최보운 · 유용원
박충권 · 이만희 · 이달희
김장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2026년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도 성인 및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9세 미만의 주니어 세대를 위한 별도의 비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

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8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8제1항”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8(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가입일 기준 19세 미만인 거주자[가입일 기준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거주자가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자산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운용할 것

4. 총납입한도가 6천840만원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360만원 이하일 것

②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91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일은 19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주니어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제3호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1항제3호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④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9세가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⑥ 국세청장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들은 이를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계좌 운용·관리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의 전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으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8”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전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8제2항에 따라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전환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납입한도는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신설>

-----.

1.·2.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8(주니어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가입일 기준 19세 미만인 거주

자[가입일 기준 15세 이상 19

세 미만인 자로서 가입일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

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

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

서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거주자가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

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

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주니어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8조제3
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
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
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8조제6
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
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
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8조제7
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
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
계좌

3. 자산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
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으로 운용할 것

4. 총납입한도가 6천840만원 이
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360
만원 이하일 것

②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
는 날부터 해당 주니어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는 제91조의1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로 본다. 이 경
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 가입일은 19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
득등의 합계액은 주니어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
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제3호
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서 제1항제3호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

다.

④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9세가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⑥ 국세청장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계좌 운용·관리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의 전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

